

유족 대표 선정서

(앞쪽)

유족 대표	성명(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희생자와의 관계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본인들의 보상금 신청 및 수령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 대표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1	성명 ①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대표와의 관계
2	성명 ①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대표와의 관계
3	성명 ①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대표와의 관계
4	성명 ①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대표와의 관계
5	성명 ①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대표와의 관계

유족 대표 선정방법

1. 유족 중 보상금 지급신청의 순위는 「민법」에 따른 재산상속의 순위에 따릅니다.
2. 「민법」에 따른 재산상속의 순위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 참조).
 - 가. 직계비속(자녀·손자녀)이 직계존속(부모·조부모)보다 선�순위(先順位)가 됩니다.
 - 나.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최근친(最近親)이 선�순위가 됩니다. 즉, 자녀가 손자녀보다, 부모가 조부모보다 선�순위가 됩니다.
 - 다. 배우자는 상속인인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같은 순위이고,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3.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서 순위가 같은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미성년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중에서 대표를 선정하여 보상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4. 위임자가 성인인 경우에는 위임자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 위임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각각 첨부해야 합니다.